# 중대범죄수사청법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46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황운하·김준형·이해민

김재원 · 정춘생 · 서왕진

신장식・조 국・김선민

박은정 · 강경숙 · 차규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 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 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 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 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 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조직, 직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대범죄"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말한다.
  - 2.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1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죄
    - 나.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 한 죄로서 제1호의 범죄자가 범한 다른 죄
  - 3. "중대범죄등"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죄를 말한다.
-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①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수사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수사청 소속으로 지청을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인구의 수, 교통, 지리적 면적 등 기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2개의 지방수사청을 두거나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의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 ④ 수사청의 위치와 지방수사청 및 지청의 설치 및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중대범죄등에 관한 수 사 직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수사청의 수사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수사청

- 제6조(수사청장) ① 수사청에 수사청장을 두며, 수사청장은 특정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 ② 수사청장은 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수사청 사무를 총괄 하며 수사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이 중 한 명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 1.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관
  -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⑤ 수사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⑥ 수사청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수사청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⑦ 수사청장은 수사청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⑧ 수사청장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수사청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수사본부장(이하 "수사본부장"이라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⑨ 수사청장은 제8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하며, 수사본부장이 제8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⑩ 제8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수사청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법무부차관
- 2. 행정안전부차관
- 3. 법원행정처차장
- 4. 대한변호사협회장
-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추천위원회는 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① 법무부장관은 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차장) ① 수사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차장은 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차장은 10년 이상 제6조제3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차장의 임명에 있어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제9조(하부조직) ① 수사청의 하부조직은 국·부 또는 과로 한다.
  - ② 수사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중대범죄등의 수사부서를 다음 각 호로 나눈다. 지방수사청 및 지청의 경우에도 같다.
  - 1.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
  - 2.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
  - 3. 마약범죄, 대형참사를 포괄하는 수사 부서
  - ③ 제2항 각호의 수사부서의 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수사본부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0조(수사본부장) ① 수사본부장은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수사본부장은 수사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 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 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부 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수사본부장을 수사청 외부에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수사본 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⑤ 수사본부장을 수사청 내부에서 임명하는 경우 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수사연구관) 수사청에 수사청 사무에 관한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 제3장 지방수사청 및 지청

- 제12조(지방수사청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수사청장을 둔다.
  - ② 지방수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직제) 지방수사청 및 지청의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수사관 등

- 제14조(수사관의 직급 등) ① 수사관의 직급은 수사1급부터 수사7급까지로 한다.
  - ②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 수사관은 수사청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수사5급 이하 수사관은 수사청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수사관의 자격) 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16조(인사위원회) ①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 2. 수사관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수사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수사관의 직무) ①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범인, 범죄사실 및 그 증거를 수사한다.
  - ② 수사관은 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수사관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2항의 지휘·감독의 적 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절차법」,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18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수사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수사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
- 9.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제20조(당연퇴직) 수사공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9조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9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수사공무원의 임용・승진・교육훈련

- ·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의 수사부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경찰청장"은 "수사청장"으로, "경찰공무원"은 "수사공무원"으로 본다.
- 제22조(보수 등) ① 수사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 급의 예에 준한다.
  - ③ 수사관 중 수사1급, 수사2급 이상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의 예에 준한다.
  - ④ 수사관 중 수사3급부터 수사7급까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7 급까지의 공안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⑤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인 수사8급 및 수사9급의 보수와 대우는 8급 및 9급의 공안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제23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사1급 이하 수사4급 이상 수사관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수사5급 이하 수사관의 경우 수사청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징계) ① 수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수사공무원을 징계한다.
  -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가.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 나.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 수사청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관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 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수사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청에 수사 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③ 수사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수사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수사청장은 수사공무원의 범 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수사3급 이상의 수사관에 대하여는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4급 이하의 수사관 및 수사공무원에 대하 여는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수사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 ②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 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제27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수사청장과 차장, 수사본부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 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수사청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2년 동안 수사청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 제28조(수사공무원의 정원) 수사공무원의 정원은 수사청 및 각 지방수 사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 제30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 서 "다른 수사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업무상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외한다)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외한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제2조 각 호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 ⑤ 수사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중대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 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31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수사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수사청장 및 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등 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그 밖에 이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 특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검사를 수사청의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하려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절차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